

입법예고

축 산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축산정책과)

1. 개정이유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21509호, 2026. 3. 31. 공포, 2027. 4. 1. 시행)됨에 따라, 가축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율하고, 토종가축 인정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는 한편,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목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가축 등록기관 지정기준, 축산업 종사자 교육기관 평가기준 등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종가축 인정 가축에 ‘염소’ 추가(안 제2조의2)

나. 가축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 관련 인정 범위 확대(안 제8조)

다. 가축 검정기관 지정 절차 신설 및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기준 마련(안 제10조, 제11조)

라.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절차 신설 및 인정농가, 인정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마.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서류 중 건강진단서를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정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바.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26조)

사. 축산업 인허가,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종사자 교육 이수증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기보유 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27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7조의2)

- 아. 축산업 종사자 교육 관련 이수과목, 과목별 면제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 자.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해제된 규정 삭제(안 제54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의 가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을 말한다.

1. 소
2. 돼지
3. 닭
4. 오리
5. 말
6. 꿀벌
7. 염소

제5조의2제3항제1호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1) 가축 육종·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가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을 “가축”,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를 “능력검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을 “법 제7조의2에 따른”으로, “(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중 “종축검정기관”은 “검정기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 대상 가축에 대한 검정업무 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의 검정 업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은 품종별로 고유한 외모, 체형 등 외형, 혈통 또는 유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며, 세부적인 인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 품종의 사진, 사육 현황
2. 품종의 관리내역(품종 및 계통의 이름, 외모 특징, 사육 시작연도, 사육경위)

3. 후대 가축 생산 및 분양 기록(분양처, 분양일자, 분양 마릿수)

③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중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등록한 가축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인정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해야 하며,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토종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인정기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의2과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2. 인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관리 사무실을 확보할 것

②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 대상 가축에 대한 인정업무 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의 인정업무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을 때는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서(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제4항을 제4항, 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이용”을 “공동이용 및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제27조의3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이용”을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제29조제1항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1)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이용”을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제33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를 “법 제26조제4항 및 규칙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1항”을 “법 제22조제1항후단”으로, “사항을 변경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2조제6항”을 “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법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이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4시간
2.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중 사육경력이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

외한다)인 가축사육업 등록자로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거나,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 8시간

3.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6시간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과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 6시간

2.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 4시간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날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을 제36조의4로 하고,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교육의 면제)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 등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에 관한 과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과목
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 교육을 이수한 자: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자 교육, 신규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교육, 다만, 축산차량 등록요령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른 교육과목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 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아래 각 호에 대해서 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54조제2호, 제4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3 및 별표 3의2로 하며,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 제1호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한다.

별표 3의4 및 별표 3의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6을 제2호 “교육실적(20점), 교육실행 능력(30점)”을 “교육실행 능력(50점)”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 기준		평가점수
시설 현황 (30)	교육장 시설 (30)	교육장 보유 여부(20)	3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책상, 의자 등을 갖춘 강의실(60㎡ 이 상)의 보유(임차한 경우를 포함 한다) 여부	보유(20) 보유하지 않음(0)	
		교육장 접근성(10)	주차시설 확보, 대중교통 접근 성	우수(10) 보통(5)	
교육 역량 (70)	교육지원 인력 (20)	교육지원 인력 보유 수(20)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인력(강사 인력은 제외) 보유 수	3명 이상(20) 2명(15) 1명(10)	
	교육실행 능력 (50)	교육계획의 타당성(20)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우수(20) 보통(10)	
		운영조직의 체계성(20)	운영조직의 체계가 교육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우수(20) 보통(10)	

		강사 인력 보유 수(10)	과목별 강사 인력 보유 수	2명 이상(10) 1명 이상 보유(5) 1명 미만 보유(0)	
--	--	-------------------	----------------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서식(종전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3cm×4cm”를 각각 “3.5cm×4.5cm”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합격일:”을 신설하고, “년 월 일 시행한”을 “년 시행한”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뒤쪽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뒤쪽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⑤란의 수정소 소재지는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각각 앞쪽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뒤쪽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종사자교육 시스템”으로 한다.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나목을 삭제하
고,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종사자교육시스
템”으로 한다.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제29호의2서식 각각 앞쪽 신청(신고)인 제출서
류란의 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종사자교육
시스템”으로 한다.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4서식 뒤쪽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
육이수 증명서”를 “교육과정 이수 여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여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1] <신 설>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 (제11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이 검정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3개월의 검정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의2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검정기관 지정기준 1) 시설·장비·인력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시설·장비·인력 기준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법 제7조의2 제2항제2호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다.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2항제3호	검정업무 정지 1개월	검정업무 정지 2개월	검정업무 정지 3개월
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2항제4호	지정 취소		
마.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조의2 제2항제5호	검정업무 정지 7일	검정업무 정지 15일	검정업무 정지 1개월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2] <신 설>

토종가축 인정 축산물의 표시(제11조의2제6항 관련)

1. 토종가축 축산물의 표시 표지도형



인정번호(제 인정기관명-번호)

2. 도형표시

가. 표지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라. 표지도형의 한글은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마.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바. 표지도형 내부의 “토종축산물”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사.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3. 표시방법

가.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나. 표지도형 밑에 인정번호(인정기관명과 번호)를 표시한다.

토종가축 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 (제11조의2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2 제4항제1호	인정 취소	
나.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의2 제4항제2호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다.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4항제3호	인정 취소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 (제11조의3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이 검정업무정지일 때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일 때에는 3개월의 검정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3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인정기관 지정기준 1) 인력·조직·시설 기준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인력·조직·시설 기준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법 제9조의3 제2항제2호	인정업무 정지 1개월 인정업무 정지 3개월	인정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다.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한 경우	법 제9조의3 제2항제3호	인정업무 정지 1개월	인정업무 정지 2개월	인정업무 정지 3개월
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	법 제9조의3 제2항제4호	지정 취소		
마.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3 제2항제5호	인정업무 정지 7일	인정업무 정지 15일	인정업무 정지 1개월

<별표 3의 3, 현행>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 아. (생략)	
자. 영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차.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출하하는 경우에는 분뇨 등 오염물이 가축에 묻어	
있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5, (생략)	

<별표 3의 3, 개정안>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 아. (생략)	
자.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출하하는 경우에는 분뇨 등 오염물이 가축에 묻어	
있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5, (생략)	

* 기존 자목을 법률로 상향(제26조제4항 신설)

<별표 3의6, 현행>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의3제2항 관련)

1. (생략)
2.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30점), 교육지원 인력(20점), 교육실적 (20점), 교육실행 능력(3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 기준		평가점수
시설 현황 (30)	교육장 시설 (30)	<u>실습 교육장</u> <u>보유</u> <u>여부(10)</u>	<u>5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u> <u>시설(200㎡ 이상)의 보유</u> <u>(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u> <u>여부</u>	<u>보유(10)</u> <u>보유하지 않음</u> <u>(0)</u>	
		<u>이론 교육장</u> <u>보유</u> <u>여부(15)</u>	<u>3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u> <u>책상, 의자 등을 갖춘 강의</u> <u>실(60㎡ 이상)의 보유(임</u> <u>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u> <u>부</u>	<u>보유(15)</u> <u>보유하지 않음</u> <u>(0)</u>	
		교육장 접근성(5)	주차시설 확보, 대중교통 접근성	<u>우수(5)</u> <u>보통(3)</u>	
교육 역량 (70)	교육지 원 인력 (20)	교육지원 인력 보유 수(20)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인력(강 사인력은 제외) 보유 수	3명 이상(20) 2명(15) 1명(10)	
	<u>교육실</u> <u>적</u> <u>(20)</u>	<u>3년간 교육</u> <u>횟수(10)</u>	<u>3년간 교육 실시 횟수</u>	<u>10회 이상(10)</u> <u>5회 이상(8)</u> <u>5회 미만(6)</u> <u>없음(0)</u>	
		<u>3년간 교육</u> <u>인원 (10)</u>	<u>3년간 교육 이수자 수</u>	<u>500명 이상(10)</u> <u>300명 이상(5)</u> <u>300명 미만(3)</u> <u>없음(0)</u>	
	교육실 행 능력 (30)	교육계획의 타당성 (10)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u>우수(10)</u> <u>보통(5)</u>	
		운영조직의 체계성(10)	운영조직의 체계가 교육이 가 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u>우수(10)</u> <u>보통(5)</u>	
		강사 인력 보유 수(10)	과목별 강사 인력 보유 수	2명 이상(10) 1명 이상 보유(5) 1명 미만 보유(0)	

<별표 3의6, 개정안>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의4제2항](#) 관련)

1. (생략)

2.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30점), 교육지원 인력(20점), [교육실행 능력\(5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 기준		평가점수
시설 현황 (30)	교육장 시설 (30)	교육장 보유 여부(20)	3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책상, 의자 등을 갖춘 강의 실(60㎡ 이상)의 보유(임 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 부	보유(20) 보유하지 않음 (0)	
		교육장 접근성 (10)	주차시설 확보,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10) 보통(5)	
교육 역량 (70)	교육지 원 인력 (20)	교육지원 인력 보유 수(20)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인력(강 사인력은 제외) 보유 수	(좌 동)	
	교육실 행 능력 (50)	교육계획의 타당성 (20)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우수(20) 보통(10)	
		운영조직의 체계성 (20)	운영조직의 체계가 교육이 가 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우수(20) 보통(10)	
		강사 인력 보유 수(10)	과목별 강사 인력 보유 수	(좌 동)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	-----	------	-----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검정대상 가축	

「축산법」 제7조의2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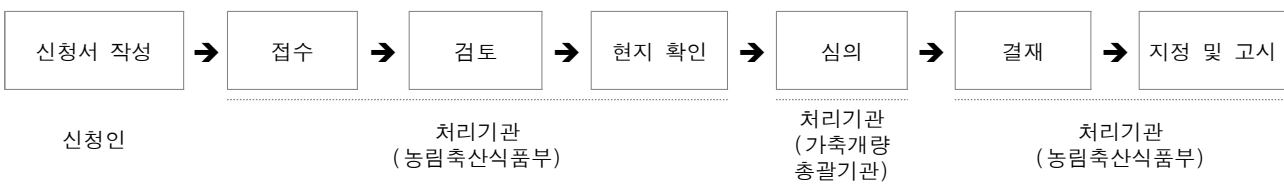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검정 대상 가축에 대한 검정업무 계획서	수수료
	2.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없음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토종가축 인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업체명 또는 농장명	축산업허가(등록) 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토종가축 축종(품종/계통)		개체번호	※ 개체번호가 있는 경우에 기재
	업체 또는 농장 소재지			
	생산규모 또는 사육규모			
	생 산 계 획	축종(품종/계통)	생산규모 또는 사육규모	연간 생산 계획량 (킬로그램 또는 마릿수)

「축산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육 품종의 사진, 사육현황 자료	수수료
	2. 품종의 관리내역(품종 및 계통의 이름, 외모 특징, 사육 시작연도, 사육 경위) 3. 후대 가축 생산 및 분양 기록(분양처, 분양일자, 분양 마릿수)	해당없음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토종가축 인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정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토종가축의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토종가축 인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정내용을 인정기관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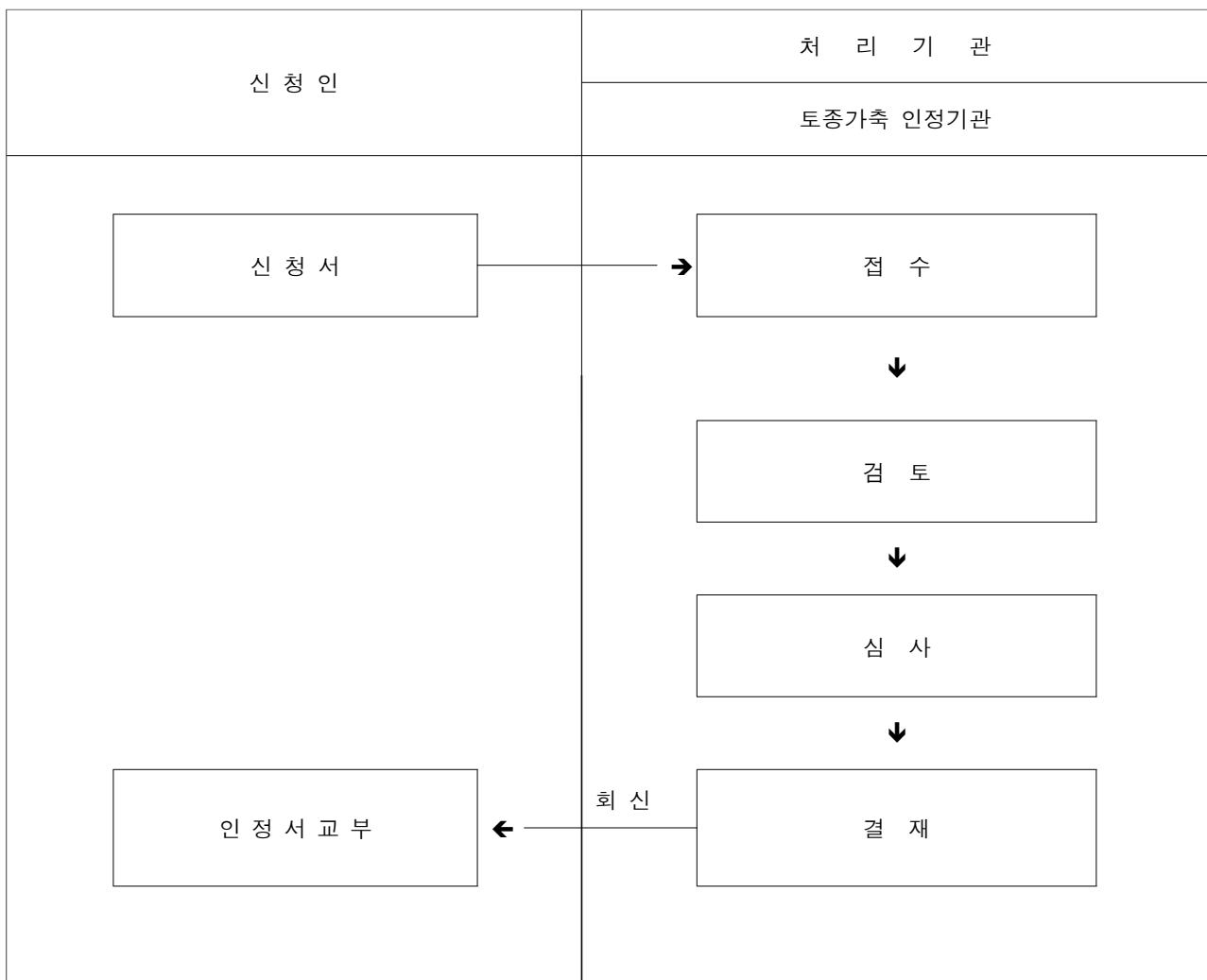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업체명 또는 농장명은 적지 아니하여도 되며,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4. “주소” 란에는 법인 또는 농가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5. “토종가축의 축종” 란에는 인정을 받으려는 토종가축을 적습니다.
6. “업체 또는 농장 소재지” 란에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연간 생산계획량” 란은 연간 생산 계획량을 킬로그램 또는 사육 마릿수 단위로 적습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정번호 : 제 호

토종가축 인정서

인정 축종
(품종/계통)

(품종/계통)

업체명 또는
농장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업체 또는 농장
소재지

생산규모 또는
사육규모

「축산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토종가축임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목적			
인정대상 가축			

「축산법」 제9조의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정 대상 가축에 대한 인정 업무 계획서	수수료										
	2.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 확인	→	심 의	→	결 재	→	지정 및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처리기관 (가축개량 총괄기관)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서식, 현행>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생 략>

제출서류	1. 「축산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수수료 (수입증지) 6,000원
------	--	-------------------------

유의사항

1. 자격증란은 해당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축산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제출서류로 내는 건강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이동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생 략>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1부 2.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수수료 (수입증지) 6,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정보(「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1. 자격증란은 해당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축산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3. 제출서류로 내는 건강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축산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일부 터 1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4. 건강진단서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현행>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귀하			응시번호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제출서류	외국에서 수정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증 사본		수수료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

..... 자 르 는 선

농촌진흥청, 시·도 시행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한자		
주소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안>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사 진 <u>3.5cm × 4.5cm</u>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귀하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제출서류	외국에서 수정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증 사본		수수료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

..... 자 르 는 선
 자 르 는 선

농촌진흥청, 시·도 시행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 진 <u>3.5cm × 4.5cm</u>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한자		
주소					사 진 <u>3.5cm × 4.5cm</u>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현행>

제	호
합격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의 사람은 <u> 년 월 일 시행한</u> 제 회 가족인공수정사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안>

제	호
합격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합격일:	
위의 사람은 <u> 년 시행한</u>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9호서식, 현행>

가축인공수정소 ☐ 개설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뒤쪽)

유의사항

-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안>

가축인공수정소 ☐ 개설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	----

(뒤쪽)

유의사항

- ⑤란의 수정소 소재지는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현행>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9. 2.>

종축업 []허개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생략)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u>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u>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종축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	--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개정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9. 2.>

종축업 []허개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	-----	----------------------

(생략)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종축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	---	--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생략)

<별지 제17호서식, 현행>

■ 축산업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31.>

부화업 []허개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	------	----------------------

(생 략)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업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업」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약취저감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고유번호증(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오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개정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31.>

부화업 []허개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	-----	----------------------

(생략)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약취저감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고유번호증(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④란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⑦란에는 부화할 알의 종류에 따라 닭·오리, 메추리 등으로 적되, 2종류 이상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종류를 모두 적습니다.
- ⑨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 제출서류 중 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종란, 시설,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현행>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31.>

정액등처리업 []허개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생략)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개정안>

■ 축산업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31.>

정액등처리업 []허개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서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15일 기타 7일
------	-----	----------------------

(생략)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업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5. 「축산업」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현행>

■ 축산업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허개 []변경 허가 신청서 ([]한우, []육우)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생략)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업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업」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생략)

<별지 제19호서식, 개정안>

■ 축산업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한우, []육우)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생략)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업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업」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5. 「축산업」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생략)

<별지 제19호의2서식, 현행>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	-----

(생 략)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 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생 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
 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생 략)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생략)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생략)

<별지 제19호의3서식, 현행>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u>접수일시</u>	처리기간	15일
------	-------------	------	-----

(생략)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u>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u>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u>건축법</u>」 <u>상</u>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	--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생략)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9. 12. 31.>

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생략)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	--	--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생략)

<별지 제19호의4서식, 현행>

■ 축산업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5. 9. 2.>

가축사육업([]닭, []오리)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u>접수일시</u>	처리기간	15일
------	-------------	------	-----

(생략)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업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업」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생략)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5. 9. 2.>

가축사육업([]닭, []오리)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생략)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생략)

영업의 종류 변경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영업의 종류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⑥고유번호	
	⑦사육 축종 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		

변경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축산법」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 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⑤란에는 기존에 허가받은 영업의 종류(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를 선택합니다.
- ⑦란에는 기존 허가받은 사육 축종을 기재합니다.(종축업은 종돈, 종계 또는 종오리,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산란계, 육계, 토종닭), 오리로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	➔	접수	➔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작성	➔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처리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별지 제29호의2서식, 현행>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한우·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7일
------	------	------------

(생략)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한우·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기타는 가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7일
------	-----	------	-------

(생략)

신청인 제출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 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 속	[] 법인합병
------	-----------	---------	----------

「축산업」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업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업」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업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업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업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법인합병 및 분할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
------	---

「축산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가. 영업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축산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사업장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법」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제25조제2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축산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관리카드(별지 제25호 서식)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축산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성명
주소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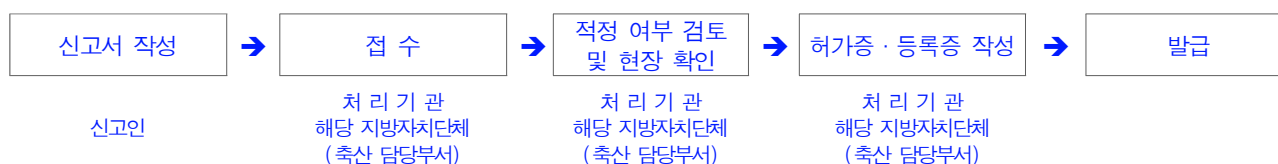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제2조의2(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의 가축”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		
		2. 돼지		
		3. 닭		
		4. 오리		
		5. 말		
		6. 꿀벌		
		7. 염소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1.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재정경제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 ----- ----- ----- -----		

각 1명

2. (생 략)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
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
축육종·유전 분야에서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2.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

-----.

1.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력 1명 이상

1) 가축 육종·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
을 갖춘 후 가축육종·유
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

	<u>격을 취득한 사람</u> 4) 「<u>국가기술자격법</u>」에 따른 <u>축산산업기사의 자 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 육종·유전 분야에 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u>법 제7조</u> 에 따 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 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 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 설·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야 한다.	제11조(검정기관의 지정) ① ---- ----- <u>법 제7조의2</u>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 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 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 정성적을 기록·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중계 등 측정기구	2. 제10조제4항----- ----- ----- ----- -----
<신 설>	② <u>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u>

<신 설>

<신 설>

<신 설>

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 대상 가축에 대한 검정 업무 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의 검정 업무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

<신 설>

정 및 지정 취소의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
정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1
항에 따른 토종가축은 품종별로
고유한 외모, 체형 등 외형, 혈
통 또는 유전적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인정하며,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토
종가축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3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 품종의 사진, 사육 현황

2. 품종의 관리내역(품종 및 계통의 이름, 외모 특징, 사육 시작연도, 사육경위)

3. 후대 가축 생산 및 분양 기록(분양처, 분양일자, 분양 마릿수)

③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중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등록한 가축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인정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토종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표

<신 설>

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인정기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9조의2 제4항에 따른 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의2과 같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2. 인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관리 사무실을 확보할 것

②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의 3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정 대상 가축에 대한 인정 업무 계획서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의 인정업무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

제11조(가축의 검정) ① (생 략)

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가축의 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가축-----

능력검정으로-----
-.

③-----
----- 법 제7조의2에 따른 -----

“검정기관”-----
-----.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중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④ -----
--- 검정기관-----

-----.

⑤ -----

--- 검정기관-----

-----.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

----- 별지 제3호서식-----

-----.

1. (현행과 같음)
2. -----

----- 건강진단서(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신 설>

②시·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수정사시험) ①·② (생략)

③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 유형 등은 별표 1과 같다.

한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의2서식-----
----- 별지 제3호의3서식-----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정사시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표 3-----.

④ ~ ⑥ (생 략)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
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
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
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
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
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
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
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
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
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④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

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
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
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축산업 허가

가. ~ 마. (생 략)

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
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2.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 제19호의5서식-----
-----.

②-----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항제5호로 이동>

2. (현행과 같음)

③-----

-- 공동이용 및 교육총괄기관
에서 운영하는 종사자교육정보
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
이라 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④ ~ ⑦ (생 략)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생 략) ②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 략) 4. <u>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u>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u>공동이용</u>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④ ~ ⑦ (생 략)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 제3항 제4호로 이동></u> ③ ----- ----- ----- ---- <u>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u>-----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u>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u>----- -----
--	--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양도
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생 략)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양
수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
본 등 영업에 관한 공법
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
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삭 제, 제2항제5호로 이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 4. (생략)
<신설>

③ (생략)

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공동이용 및 교육정보시스템-----.

 -----.

1. (현행과 같음)
2.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만 해당한다)

3.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여부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

 -----.

1. (생략)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3. 법 제22조1항에 따라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4. 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 폐업, 중요한 등록사항 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6. (생략) ②·③ (생략)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6조제4항 및 규칙 제30조 ----- -- 3. 법 제22조제1항후단----- ----- <u>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u>----- 4. 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1항 ----- ----- ----- ----- ----- ----- 5.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목별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 -----
---	---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신 설 >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4시간

2.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 중 사육경력이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인 가축사육업 등록자로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거나,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 8시간

3.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6시간

<삭 제, 제36조의3제1항으로 이동>

<삭 제, 제36조의3제2항으로 이동>

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 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
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
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신 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
수교육은 축산 관련 법령, 가축
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과
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
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22
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
록을 한 자: 6시간

2.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
4시간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축
산업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날
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
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
야 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등록한 날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생략)

<신설>

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 제3항-----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교육의 면제)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 등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에 관한 과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과목

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 교육을 이수한 자: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자 교육, 신규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교육, 다만, 축산차량 등록요령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른 교육 과목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 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제36조의3 (생략)

제36조의4 (현행 제36조의3과 같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4.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u> <u>절차: 2017년 1월 1일</u>	<u><삭 제></u>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u>10.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u> <u>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u>	<u><삭 제></u>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u>12.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u> <u>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u> <u>017년 1월 1일</u>	<u><삭 제></u>
<u>13.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u> <u>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317, 2330